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무원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노력 규정 신설〉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56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군무원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군무원 휴직자의 업무 공백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하여 대행하고 있으나¹⁾,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노력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고 단순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음²⁾.

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일반군무원
2. 제54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2) 「군무원인사법」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 한편, 최근 「군인사법」 개정('24.12.3. 법률 제20538호)을 통해 군인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군무원에 대해서도 군인과 동일하게 임용권자가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자유로운 휴직 여건을 조성하고 일·가정 생활의 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군인의 경우 국토방위태세의 유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결원

3. 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경우

4.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研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3) 「군인사법」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이전	개정 이후(법률 제 20538호)
제48조(휴직)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휴직)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u>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보충의 시급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군무원의 주된 임무는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⁴⁾로 결원 보충이 동일한 수준의 시급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국가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은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국방부는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결원보충을 위한

4)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으며, 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인과 다르게 군무원에게만 임용권자의 결원보충을 위한 노력 규정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